【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22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공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바른 심사와 바른 평가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주요업무 및 기능

우리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 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사항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등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1.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 인원
직 위	근무지	진료과목 등 전문분야		
계				27명
진료심사평가 위원장	본원	-		1명
지역심사평가 위원장	서울지원	-		1명
	부산지원			1명
	광주지원			1명
	대전지원			1명
	창원지원			1명
상근심사위원	본원	내과	· 감염 · 순환기(부정맥) · 순환기(스텐트) · 혈액종양(조혈모세포이식)	4명
		소아청소년과		1명
		신경과		1명
		비뇨기과		1명
		산부인과		1명
		안과		1명
		이비인후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정형외과		1명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척추)		1명
		흉부외과		1명
		복수면허자주1 또는 건강보험분야전문가주2		3명
	서울지원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척추)		1명
상근평가위원	본원	-		3명

주1. 복수면허자 :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이나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건강보험분야전문가 : 상근심사위원 자격 참조

2. 근무조건

○ 임기 : 2년(재연임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신분으로 법적 임기 보장
- 재신임 절차를 통한 지속적인 근무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수준의 대우 및 복리후생 제공

○ 근무형태 : 최소 주3일 이상 근무

(단,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및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주5일 근무)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함.

4.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

○ 접수기간 : 2014. 11. 17.(월) ~ 11. 25.(화), 18:00까지

○ 접 수 처 : 경영지원실 인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빌딩 9층)

○ 방 법 : 방문(대리인 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 일시까지 인사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37-706)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빌딩 경영지원실 인사부

○ 심사일정(예정)

구 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 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2014. 11. 27.(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기타 심사위원	2014. 12. 3.(수)	

※ 상기일정은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부. (사진부착)
○ 학과가 표기된 학력증명서 1부. (대학이상 학위증명서 일체)
○ 학위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요양기관 경력 포함) 각 1부.
○ 의사 면허증(응시분야별 해당면허증) 사본 1부.
○ 전문의(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병역필 확인 증빙 서류 1부.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병적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는 응시원서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함.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6. 응시자격

<진료심사평가위원장 ·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자격>

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심사위원 · 평가위원 자격>

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라.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마.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및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심사평가원 또는 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단체를 포함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공통 자격>

○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요양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기타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7. 임용일(예정)

○ 진료심사평가위원장 : **2014. 12월중**

○ 기타 심사위원 : **2015. 1월초**

8. 기 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합격,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인사부(☎ 02-705-6580, 6587)로 문의 바람.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로 나와 방배역 방면으로 200M 직진하면 우측에 있음. (도보 2분 거리)

2014. 11.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